

평가 사전 준비자료 협조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준비 자료를 안내 하오니 평가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준비자료

- 가. 배상책임보험 증서·약관 및 5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
- 나. 퇴직금 적립 근거자료·약관
- 다. 본인부담금 증빙자료 등
- 라. 급여종류별 수급자, 직원 현황 (하단 양식 참조)
 -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는 평면도와 위치도 포함

2. 안내사항

- 가. 평가 예정일에 평가를 실시하며, 천재지변 외 평가일정 변경불가
- 나. 재가기관 평가 중 '기관평가'는 지역본부 평가팀에서 수행
 - 기관평가 후,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방문 실시
 - ※ 다만,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,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팀이 실시
 - 서비스만족도 조사(유선) 지표는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(고객센터)
- 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의견수렴방을 통하여 평가 종료 후 의견 제시 가능
 -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/ 로그인(공인인증서) / 기관평가 / 의견수렴방 등
 - ※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급여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로써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, 서비스모니터링, 현지확인심사 등의 업무와는 구분됨을 안내합니다.

※ 참고양식

① 수급자현황

- 정기평가 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이용한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- 수시평가 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
연번	수급자명	출생연도(성별)	주요질환	급여(대여) 개시일	급여(대여) 종료일	급여개시 인정등급	현재 인정등급	비고
1	김건강	1984년 (남)	치매	'17.3.1.	'17.2.3.	1		병원입원
2	이요양	1984년 (여)	중풍	'18.4.1.		2	3	

② 직원현황

- 정기평가 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(성명 가나다순)
- 수시평가 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(성명 가나다순)

연번	직원명	생년월일(성별)	자격구분	입사일자	퇴사일자	재직기간	비고
1	김건강	1984년 (남)	간호사	'16.11.1.	'17.12.31.	32개월	
2	이요양	1984년 (여)	요양보호사	'17.1.1.		14개월	